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-353호

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62호(2011.03.03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-22호(2011.03.31.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-38호(2011.06.10.)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-109호(2012.08.02.)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3-122호(2013.11.07.)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-46호(2020.03.26.)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고,

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4-34호(2014.03.0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-205호(2019.12.19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-104호(2019.06.2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「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4일

성 북 구 청 장

①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② 공람·공고 내용

가. 사업명칭 :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-2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12,744.6㎡

라.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19층, 8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3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2,154.9㎡, 공원 708.7㎡

③ 공람기간 : 2021. 3. 4. ~ 3. 19.[15일간]

④ 시 행 자

- 가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5(동선동5가 41-1), 2층
 나. 성 명 :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손장근

⑤ 사업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120개월

⑥ 공람장소

- 가.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72)
 나.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924-6584)

⑦ 관계도서

- 동선2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및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